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6. 6. 14. (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 숙 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6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3. 제안이유

「진로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나. 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다. 지역 진로교육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라.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

마. 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안 1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진로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례안의 제2조제6호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진로전담교사 정의 및 배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조례안 제8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제1항의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진로교육센터’로 하며,
- 「진로교육법」 제17조의 지역진로교육협의회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제1호의 ‘검토’를 ‘지원’으로 수정한 것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개정하고, 의미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문구를 개정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법체계상 문제가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